

구미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5년 6월 30일 임성수의원외 6인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7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7월 8일

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생략(서면)

나. 제안이유

○ 현 「구미시의회청원심사규칙」에는 의장인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“청원심사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하여 회부·심사토록 되어 있으나,

○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되어 있어, 우리시의회도 소관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현 실태에 맞게 개정코자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의장은 그 청원서를 회부할 “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”는 내용을 “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

○ 제6조 제1항(청원서 회부 및 심사)중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“소관상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거나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·회부 한다.”로 하여 현 실태에 맞게 개정함.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

3. 검토보고 요지 : 전문위원 이춘배

- 「구미시의회청원심사규칙」 일부개정규칙 안은
임성수의원과 여섯분의 의원이 제출한 의원발의 안으로
- 현 「구미시의회청원심사규칙」에는 의장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
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“청원
심사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하여 회부·심사토록 되어 있으나,
-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
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되어 있어, 우리시
의회도 소관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현 실태에 맞게 개정
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생략

8. 기타필요한사항 : 생략